

의안번호	제 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1월 21일

#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

의안 번호	9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18. 11. 21.  
제출자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 사유

- 충청권 행정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·운영 중인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지방자치회관 입주시기에 맞추어 기획단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한 조항 삭제 및 중앙부처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, 시·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을 변경 및 폐지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- 4개 시·도가 합의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(안)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 및 상생협력 기획단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목적 및 설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목적과 설치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복잡한 목적 조항을 법령 입안심사기준과 현실에 맞도록 목적과 설치, 두 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충청권 행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

### 나.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·조직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,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결정하기 위하여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두며,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시·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함.

### 다. 실무협의회 및 경비부담(안 제13조 및 제14조)

- 협의회와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

### 라. 규약개정 등(안 제15조)

-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.

## 3. 규약 개정(안)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나. 관련법규 발취 : 별첨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#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

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충청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를 말하며, 이하 “구성단체” 라 한다)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
2.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
4.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
5. 시·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·변경·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
6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 등에 관한 사항
7. 상·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
8. 자원의 개발·이용 및 조성에 관한 사항
9. 농림수산물의 유통·판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
10.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·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 상 필요한 사항

제4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, 세종특별자치시장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로 하고, 회장은 시·도별 직제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윤번제로 한다.

③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·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, 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5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기관 등의 참석)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구성단체의 실·국장 및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료제출 요구 등)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의견의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미흡한 사항 조정 요청)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, 관련 공공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는 구성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·국장과 협의안건 관련 실·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,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실·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,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 다만,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협의회에 검토의 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경비부담)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·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.

제15조(규약개정 등)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6조(보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8조(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□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

제16조(규약개정 등) 협의회의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